

# 급여지급 신청서(DC / 기업형IRP)

담당자	책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

## 1 기본 정보

사용자(기업)명*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제도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형DC <input type="checkbox"/> 표준형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등록방법*	<input type="checkbox"/> 개별 등록	<input type="checkbox"/> 일괄 등록 (총 신청인원:      명)	

※ 일괄등록 신청은EXCEL 파일로 제출 가능

## 2 개별 등록

### 1 공통입력사항 [64414]

가입자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중도인출	청구구분* (퇴직신청 시)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이전
IRP이전 예외사유	<input type="checkbox"/> 근퇴법 시행이전 퇴직 <input type="checkbox"/> 만5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시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근로자
입사일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퇴직일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물이전 <sup>주1)</sup>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중간정산일 <sup>주2)</sup>		중간정산지급일 <sup>주2)</sup>	

### 분리과세 정보<sup>주3)</sup> [선택기재]

분리과세 사유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사망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요양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3개월 이상 요양 추가정보	의료비 및 간병인 금액	원	휴직/휴업 개월수      개월

-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저율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적용
- ㉡ 적용대상: 가입자부담금의 세액공제분 및 가입자부담금 이자

### 중도인출 신청 [선택기재]

중도인출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일부	일부 중도인출금액 <sup>주4)</sup>	원
매도상품지정 (선택 사항)	상품명 (일부 중도인출 신청 시)		신청금액
	①		원
	②		원
중도인출사유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 (무주택자) <input type="checkbox"/> 개인회생절차개시(가입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전세금/주택임차 보증금 부담(무주택자) <input type="checkbox"/> 파산선고(가입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요양(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2 회사 반환금 정보 [선택기재]

일부 기업 반환 사유 (택 1)	<input type="checkbox"/> 일부 기업반환 <sup>주5)</sup>	일부 기업반환 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전환금액 <sup>주6)</sup>	국민연금 전환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sup>주7)</sup>	임원 퇴직소득 한도금액	원

-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한도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 + {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 환산액 × 10% × 2012.1.1 이후 근속연수 × 3배 }
- ㉡ 지급 신청액에서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반환신청하는 경우, 기업계좌로 반환



**③ 추가 입력정보[선택기재]**

잔여 부담금 <sup>주8)</sup> * [추가 입금금액]	<input type="checkbox"/> 해당 (추가 입금액 있음)	퇴직연금(법정) 추가입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추가 입금액 없음)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과세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합산과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중간정산 기산일</td> <td></td> </tr> <tr> <td>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sup>주9)</sup></td> <td></td> </tr> <tr> <td>기납부 퇴직소득세<sup>주10)</sup></td> <td></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중간정산 기산일		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sup>주9)</sup>		기납부 퇴직소득세 <sup>주10)</sup>	
	중간정산 기산일								
	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sup>주9)</sup>								
	기납부 퇴직소득세 <sup>주10)</sup>								
<input type="checkbox"/> 해당 (합산과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속기간 중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내역 합산과세</td> </tr> </table>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속기간 중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내역 합산과세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근속기간 중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내역 합산과세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당해연도 이전에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적용여부</td> </tr> </table>			당해연도 이전에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적용여부						
당해연도 이전에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합산과세)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 해당사항 없음</td> </tr> </table>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④ 입금계좌 정보 (택 1)\***

일시금 수령 (IRP 이전 예외)	입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3자 수령'은 지급사유가 '사망'인 경우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상속인에게 지급			
IRP 과세이연 입금 계좌	이전후 퇴직연금사업자	이체 은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IRP 계좌번호 <sup>주11)</sup>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 퇴직자 동의<sup>주12)</sup>**

사용자(기업)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용자(기업)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입자(퇴직자명):  (서명)

**■【선택 서류】 체크 [✓]**

-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신청인 작성)  
※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일체 포함
  - 중도인출 체크리스트(은행 작성)
  -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분리과세 사유별 증빙자료
  - 다른 금융기관의 IRP로 급여 이전  
- 가입자의 IRP 계좌 사본  
(또는 IRP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 IRP 이전 예외  
- 외국인 근로자 해외출국 약약서
  - 사망에 의한 지급  
- 대표상속인 지정 확인서 외
- ☞ 자세한 사항은 작성방법 참조

20    년    월    일

가입자* (퇴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명	서명/날인
* 가입자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지급예정일 안내문자 발송(중도인출건 제외)		
기업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업명 /명판	서명/날인
접수자*	성명 /행번	접수일자



## ■ 첨부 서류

구분	업무 내용	필요 서류명
분리과세 신청	☛ 가입자의 사망	▪ 사망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 3개월 이상 요양	▪ 의사의 진단서 및 의료비영수증 (필수) ▪ 간병인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등) 포함된 간병료영수증
	☛ 해외 이주	▪ 해외이주 신고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입자의 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 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중도인출 신청	☛ 중도인출에 의한 지급 증빙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신청인 작성) ▪ 중도인출 체크리스트(은행작성) ▪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자료
제3자 수령	☛ 사망에 의한 지급 증빙서류	▪ 가입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의 범위 확인) ▪ 퇴직연금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 (인감증명서 포함)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선택사항) ▪ 대표상속인의 통장사본 (당행계좌 제외)
퇴직금 합산과세	☛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과세 서류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년도)

## ■ 작성 방법

### ① 공통입력사항

- 주1) 현물이전 : DC가입자 퇴직 시 운용자산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개인형IRP로 이전 요청  
 ☛ 현물이전 가능한 수익증권(일부 고유계정계대 포함)에 운용 및 입금계좌가 당행 개인형IRP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개인형IRP 입금 완료까지 신청일 포함 2영업일 소요
- 주2) 중간정산일 및 중간정산지급일 : 근로자가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중간정산일과 중간정산지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주3) 분리과세 사유: 가입자부담금의 세액공제금액 및 이자에 대해서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시,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주4) 일부 중도인출 금액: 납입한 적립금 중에서 매도상품을 지정하여 일부 적립금만 중도인출 가능

### ② 회사 반환금 정보

- 주5) 일부 기업반환 : '선납' 등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일부 기업에 반환하는 금액있는 경우
- 주6) 국민연금 전환금 : 국민연금 전환금 기업 반환 시에는 국민연금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하여 IRP로 추가 입금을 해야 과세이연이 완료
- 주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금액은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 + {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환산액 × 10% × 2012.1.1 이후 근속연수 × 3배 } 로 계산하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세로 계산을 위해 기업으로 반환

### ③ 추가 입력정보

- 주8) 잔여부담금[추가입금액]으로 입력한 금액만큼 추가입금이 이루어져야 지급 처리가 완료
- 주9) 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 중간정산 합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내역(세전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함  
 ☛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급받은 세전 퇴직급여액 확인
- 주10) 기납부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 합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받을 당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을 모두 입력  
 ☛ 중간정산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직소득세액 확인

### ④ 입금계좌 정보

- 주11) IRP계좌가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 IRP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 추가 징구

### ⑤ 퇴직자 동의

- 주12)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만 사용자와 가입자(퇴직자)가 합의한 경우 작성

